

**생산, 수입 또는 판매가 금지된 손 소독용 알코올 함유 화장품의 유효성분 및 특성 규명에 관한****보건부 공고**

불기 2567년(서기 2024년)

불기 2558년(서기 2015년) 화장품법 제5조 첫번째 단락, 제6조 제1항과 제4항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, 보건부 장관은 2024년 2월 22일 개최된 화장품위원회 제1차 회의의 권고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제1조 본 공고는 관보에 공표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2020년 3월 9일자 보건부 공고 생산, 수입 또는 판매가 금지된 손 소독용 알코올 함유 화장품의 특성(2020년)을 폐지한다.

제3조 에틸알코올(ethyl alcohol) 또는 에탄올(ethanol), 아이소프로필알코올(isopropyl alcohol) 또는 아이소프로판올(isopropanol), 및 n-프로필알코올(n-propyl alcohol) 또는 n-프로판올(n-propanol)을 손 소독용 알코올 함유 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지정한다.

제4조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손 소독용 알코올 함유 화장품 중 제3조에 명시된 유효성분 단독 또는 이들 유효성분의 조합이 부피 기준(volume by volume) 70% 미만 또는 중량 기준(weight by weight) 65% 미만 농도로 함유된 제품은 생산, 수입 또는 판매가 금지된다.

2024년 4월 25일 공고

총라난 스리카우

보건부 장관